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 1799 호
- 다. 제출일자 : 2020. 8. 12.
- 라. 회부일자 : 2020. 8. 21.

2.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 2020회계연도 운용계획 변경(1차)

1) 수입계획 변경

- 운용규모 5,815백만원 증액
(당초) 49,921백만원 → (변경) 55,736백만원
- 예치금 회수 5,815백만원 증액
(당초) 12,257백만원 → (변경) 18,072백만원

2) 지출계획 변경

- 운용규모 5,815백만원 증액
(당초) 49,921백만원 → (변경) 55,736백만원
- 재무활동(예치금 이월) 5,815백만원 증액
(당초) 11,881백만원 → (변경) 17,696백만원

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시설물 관리 증액(2차)

1) 지출계획 변경

- 도로시설물 관리 1,300백만원 증액(전산개발비 신설)
(당초) 38,040백만원 → (변경) 39,340백만원
· 도로굴착복구 종합 개선대책 세부과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전면 재개편 사업
- 재무활동(예치금) 1,300백만원 감액
(당초) 17,696백만원 → (변경) 16,396백만원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 내역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구분	당초 (A)	*1차변경	2차변경 (B)	증감 (B-A)	구분	당초 (A)	*1차변경	2차변경 (B)	증감(B-A) (증감률)
계	49,921	55,736	55,736	5,815	계	49,921	55,736	55,736	5,815
원인자부담금	37,264	37,264	37,264	-	도로시설물관리	38,040	38,040	39,340	1,300 3.4(%)
이자수입	400	400	400	-	도로굴착복구공사	37,820	37,820	37,820	-
예치금회수	12,257	18,072	18,072	5,815	도로굴착복구시스템	205	205	1,505	1,300
					일운영비	15	15	15	-
					재무활동(예치금)	11,881	17,696	16,396	4,515 38.0(%)

※ 1차변경 :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로 재무활동 중 예치금 5,815백만원을 증액 (48.9%)함에 따라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였으나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 제11조제2항1)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재무활동(예치금)’ 지출금액을 당초 118억 81백만원에서 176억 96백만원으로 48.9%(58억 15백만원) 증액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건임.
- 참고로, 동 변경안에 제시된 2차 변경안 내역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전면 재개편 사업 추진을 위해 ‘재무활동(예치금)’에서 13억원을 감액(7.3% 변경)하여 ‘도로시설물 관리’로 13억원을 증액(3.4% 변경)한 건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의 변경에 해당하여 금회 의회 의결사항은 아님.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변경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	1차변경	→	2차변경
계	49,921	5,815 (11.6%)	55,736	-	55,736
도로시설물 관리	38,040	-	38,040	1,300 (3.4%)	39,340
도로굴착복구공사	37,820	-	37,820	-	37,820
도로굴착복구시스템	205	-	205	1,300 (634.1%)	1,505
일반운영비	15	-	15	-	15
재무활동(예치금)	11,881	5,815 (48.9%)	17,696	-1,300 (-7.3%)	16,396

1)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현황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법」 제91조2)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3)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가 부담한 비용과 기금예치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음.
-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5조4)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
- 2)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 ⑥ (생략)
- 3)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해부분 및 간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기율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⑤ (생략)
- 4)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 최근 5년간 도로굴착복구기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19년도 제외) 약 250억원 내외의 수입 및 지출이 이뤄지고 있고, 수입액 대비 지출액의 차는 예치금의 증감으로 처리하여 2019 회계연도 결산 기준 예치금 잔고는 180억 7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남([표] 참조).

[표] 최근 5년간 도로굴착복구기금 집행 현황

구 분		2015년도 (결산)	2016년도 (결산)	2017년도 (결산)	2018년도 (결산)	2019년도 (결산)
수 입 액		25,709	23,235	22,143	32,058	40,486
원인자부담금		25,240	22,828	21,696	31,672	39,945
이자수입 등		469	407	447	386	541
지 출 액		24,268	24,029	25,164	31,018	36,905
굴 착 복 구 공 사	소 계	23,818	23,777	24,962	30,873	36,673
	직접복구비	17,717	17,450	18,260	25,130	32,333
	사후정비비	5,553	5,568	5,218	4,382	2,834
	감리비및부대비	548	759	1,484	1,361	1,506
	기타(전산운영 등)	450	252	202	145	232
증 감		증 1,441	감 794	감 3,021	증 1,040	증 3,581
년도말 잔액		17,265	16,471	13,451	14,491	18,072

- 일반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당초 지출계획은 최근 3년 동안의 수입/지출규모 및 추세를 감안하여 전년도에 수립하고, 당해연도 상반기(1월)와 하반기(7월)에 도로굴착공사 사업시행자로부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받아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사물량을 반영한 지출계획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게 됨.

- 이 때 법 제11조제2항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재무활동(예치금)’의 지출계획 즉, ‘20년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수입금의 예치계획을 당초 118억 81백만원 대비 48.9%(58억 15백만원)를 증액하려는 것으로,
- 여기서, 58억 15백만원의 증액 요인은 ‘19년도 도로굴착복구 기금 결산(‘20.5월) 결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계획 대비 실제 수입액과 지출액 간에 발생한 잉여금의 차에 해당하고,
- 이 결산 잉여금을 ‘2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지출 항목 중 ‘재무활동(예치금)’으로 예치할 경우 재무활동 항목 지출금액이 당초 대비 48.9%가 증액됨에 따라 의회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한 법정 상한 20%를 초과하기에 본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임.

- 5)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표]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계획 대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계획(A)	*변경 계획(B) (‘19.8월)	결산(C) (‘20.5월)	결산-계획 차 (C-B)
수입	소 계	27,906	42,910	40,486	-2,424
	원인자부담금	27,651	42,655	39,945	-2,710
	이자수입 등	255	255	541	286
지출	소 계	30,140	45,144	36,905	-8,239
	도로굴착복구공사	29,784	44,784	36,673	-8,111
	그 외 비용	356	360	232	-128
(수입) - (지출)		-2,234	-2,234	3,581	5,815

*사업시행자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에 의한 수입·지출 계획

- 여기서, 재무활동의 예치금은 복구공사 등에 직접 투입하는 재원이 아니라 향후 기금운용계획변경심의를 통해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등에 투입될 예비재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모성 지출이 아닌 저축성 지출이라는 점에서 본 변경안은 법정절차 이행을 통한 단순 회계상의 정리에 불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본 변경안의 절차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회 의회 의결을 구하기 위해 재무활동(예치금) 지출계획 변경 건으로 지난 3월 12일 서울시는 기금운용계획변경 1차 심의를 개최(1차 변경안)한 바 있으며,
- 이후 4월 16일에는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대책 추진 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46호, '19.2.26)'의 일환으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위해 재무활동(예치금) 정책사업에서 13억원을 감액하고 도로시설물관리 정책사업 중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비목에서 13억원(3.4%)을 증액하는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 심의를 개최(2차 변경안)함에 따라,

[표] 2020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구분	당초 (A)	*1차변경	2차변경 (B)	증감 (B-A)	구분	당초 (A)	*1차변경	2차변경 (B)	증감(B-A) (증감률)
계	49,921	55,736	55,736	5,815	계	49,921	55,736	55,736	5,815
원인자부담금	37,264	37,264	37,264	-	도로시설물리관	38,040	38,040	39,340	1,300 3.4(%)
이자수입	400	400	400	-	도로굴착복구공사	37,820	37,820	37,820	-
예치금수회	12,257	18,072	18,072	5,815	도로굴착복구시스템	205	205	1,505	1,300
					일운영비	15	15	15	-
					재무활동(예치금)	11,881	17,696	16,396	4,515 38.0(%)

※ 1차변경 :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로 재무활동 중 예치금 5,815백만원을 증액(48.9%)함에 따라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였으나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음

- 1차 변경안에 대한 의회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변경안(변경률 3.4%로 법정상한 20% 이내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 필요 없음)이 이루어져 1차 변경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전제했다고 보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2차 변경안에 대해 이루어진 서울시 기금 심의가 본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권을 절차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다만, 본 변경안에 해당하는 1차 변경안이 단순히 기금 회계상의 정리에 해당하고 2차 변경안은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범위 내에서의 일상적인 변경이기 때문에 1차 변경안과 2차 변경안을 별건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2차 변경안이 1차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결과적으로, 본 변경안의 절차적 측면에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사유는 서울시가 1차 변경안에 대한 의회 제출이 다소 늦어진 데 따른 것인데,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기금법」 제11조를 설명한 행안부 지침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예치금 회수)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왔으나,
- 최근 행안부가 의견을 달리하고, 7월 개정된 ’21년도 지침에는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조정 시, 기존 재무활동(예치금의 상위 개념) 금액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하여, 이를 반영해 이번 회기에 의회의결을 받는 것이라는 입장임.
- 한편,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이미 원인자 부담금 수입 발생 시점에서 기금계좌에 적립된 후 지금까지 남아 있는 계좌잔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본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결 여부가 기금의 지출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으나,
- ’21년도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결산에 따라 회계상 정리 시에도 재무활동의 변경이 20%가 초과하면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개정된 바, 이번 회기 이후 이러한 사안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임.

[붙임 1] 2020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붙임 2] 2020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붙임 1]

2020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도로굴착복구기금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결산에 따른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위한 「2020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심의회」 결과 보고임

심의회 구성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9조(심의회 운영)
- 위원구성: 내부 5명, 외부 7명
(내부) 안전총괄실장(위원장), 안전총괄관(부위원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도로관리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외부) 시의원 2, 민간기업 2, 공공기관 3
- 기 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회 개요

- 일 시: 2020.3.10.(화) ~ 2020.3.12.(목)
- 방 법: E-mail을 이용한 서면심의
- 안 건: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결산보고서(안)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결과: 원안가결(재적12, 출석 9, 찬성 9)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9조(심의회 운영)제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안건 주요내용

○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결산보고서(안)

-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18년도말 조성액 ①	당해연도 증감액			2019년도말 조성액 ⑤ = ① + ②
	계 ② = ③ - 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14,491	3,581	40,486	36,905	18,072

- 수입·지출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계 획	실 적	비율		계 획	실 적	비율	
운용 규모	57,401	54,977	95.8%	운용 규모	57,401	54,977	95.8%	
합계	42,910	40,486	94.4%	당해연도 합계	45,144	36,905	81.7%	
원인자부담금	42,655	39,945	93.6%	도로 굴착 복구 공사	소계	44,784	36,673	81.9%
이 자 수 입	245	541	220.8%		직접복구공사	40,278	32,333	80.3%
기 타 수 입	10	0	0.0%		사후정비공사	3,000	2,834	94.5%
					감독업무비	1,500	1,500	100.0%
					시설부대비	6	6	100.0%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355	231	65.1%	
				사무관리비	5	1	20.0%	
예치금 (전년도 이월액)	14,491	14,491	100.0%	예치금 (다음년도 이월액)	12,257	18,072	147.4%	

- 예치금 조성 현황

(단위: 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⑤ = ① + ②	잔액 예치 내역	
	계 ② = ③ - 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정기예금	공금예금
14,490,564,843	3,580,953,391	40,486,111,291	36,905,157,900	18,071,518,234	10,000,000,000	8,071,518,234

○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사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내역 변경
 (전년도 이월액) 당초 12,257백만원 → 변경 18,072백만원
 (당해연도 이월액) 당초 11,881백만원 → 변경 17,696백만원
- 수입·지출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운용 규모	49,921	55,736	5,815	운용 규모	49,921	55,736	5,815		
합 계	37,664	37,664	-	합 계	38,040	38,040	-		
원인자부담금	37,264	37,264	-	도로 굴착 복구 공사	계	37,820	37,820	-	
이 자 수 입	400	400	-		시 설 비 및 후 대 비	소계	37,400	37,400	-
	이하여백					직접 복구	33,532	33,532	-
						사후 정비	2,332	2,332	-
						감독 업무비	1,500	1,500	-
						시설 부대비	36	36	-
						연구개발비	420	420	-
					시스 템 개 발 및 유 지 운 영	계	205	205	-
						유지운영	205	205	-
					일 반 운 영 비	계	15	15	-
				사무관리비		15	15	-	
예치금 (전년도 이월액)	12,257	18,072	5,815	예치금 (당해연도 이월액)	11,881	17,696	5,815		

□ 행정사항

- 2020.3. : 기금운용 심의결과 제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0.3.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붙임 2]

2020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전면 재개편을 위해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한 「2020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결과 보고임

심의회 구성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9조(심의회 운영)
- 위원구성: 내부 5명, 외부 7명
(내부) 안전총괄실장(위원장), 안전총괄관(부위원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도로관리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외부) 시의원 2, 민간기업 2, 공공기관 3
- 기 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회 개요

- 일 시: 2020.4.16.(목)
- 방 법: E-mail을 이용한 서면심의
- 안 건: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결과: 원안가결(재적12, 출석 10, 찬성 10)

-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9조(심의회 운영)제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 주요내용

○ **안 건**: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주요내용: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전면 개편 ISP 수립 용역 결과('20.4.) 반영
전산개발비 신설

- 지 출: 38,040백만원 → 39,340백만원 (증 1,300백만원)

- 예 치 금: 17,696백만원 → 16,396백만원 (감 1,300백만원)

○ **수입·지출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운용 규모	55,736	55,736	-	운용 규모	55,736	55,736	-		
합 계	37,664	37,664	-	합 계	38,040	39,340	증 1,300		
원인자부담금	37,264	37,264	-	도로 굴착 복구 공사	계	37,820	37,820	-	
이 자 수 입	400	400	-		시설비및부대비	소계	37,400	37,400	-
						직접 복구	33,532	33,532	-
						사후 정비	2,332	2,332	-
						감독 업무비	1,500	1,500	-
						시설 부대비	36	36	-
					연구개발비	420	420	-	
				시스템 개발 및 유지 운영	계	205	1,505	증 1,300	
					유지운영	205	205	-	
				일반 운영비	전산개발비	-	1,300	증 1,300	
					계	15	15	-	
					사무관리비	15	15	-	
예치금 (전년도 이월액)	18,072	18,072	-	예치금 (당해연도 이월액)	17,696	16,396	감 1,300		

행정사항

○ 2020.4. : 기금운용 심의결과 제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0.4.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